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20184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2018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819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호철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819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0. 21. 접수 제186387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2021. 11. 11.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19.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B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김봉원, 판사 최승원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E, 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4.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E 대 364㎡

2. 서울특별시 서초구 F 대 375.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75.8분의 61.65. 끝.

